

결 정

2018 - 3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2월 7일자 「[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궁금한 시민」 제목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월 7일자 「[서소문사진관]휴게소 들른 북한응원단, 꽃단장」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



[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궁금한 시민

[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궁금한 시민 (가평=연합뉴스) [redacted]
기자 = 북한 응원단이 7일 오후 가평휴게소에 도착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2018.2.7 [redacted]@yna.co.kr/2018-02-07
14:39:4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
포 금지.>

』

※‘에캠코리아’라는 커뮤니티와 미디어오늘 기사를 합성해 삭제 전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재현한 것임

<<http://www.fmkorea.com/best/935752334>>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04>>

(중앙일보)= 『

화장실에 들른 북한 응원단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9

북한 응원단이 7일 오후 강원도 인제로 이동하던 중 가평휴게소에 도착해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응원단원들이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응원단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등 옷매무시를

<캡처시각 2. 7. 18:27>

<<http://news.joins.com/article/22353309>>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사진은 2월 7일 북한 응원단이 여자 화장실 안에서 줄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2시 39분쯤 단원들이 가평 휴게소 여자 화장실을 들러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다수 전송하였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언론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연합뉴스는 2시간 11분여가 지난 오후 5시 51분쯤 화장실이나 내부 모습을 담은 일부 사진들을 삭제하였다.

중앙일보는 「[서소문사진관]휴게소 들른 북한응원단, 꽃단장」이란 제목 하에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 중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사진을 포함해 화장실 내부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화보로 실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화장실 내부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임에도 이를 드러내 보인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촬영한 것은 무심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행태이며,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북한응원단에 과도한 관심을 가져 여성 인권을 배려하지 못한 채 선정주의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사생활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